

변경대비표

시행일 : 2020.2.24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조 (목적) 이 기준 및 절차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,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타임폴리오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이 기준 및 절차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,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타임폴리오자산운용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이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체결하고,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3조 (용어의 정리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.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~ 4.<생략></p> <p>5.~ 6.<추가></p>	<p>제3조 (용어의 정리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~ 4.<이하동일></p> <p>5. “집합투자업”이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과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·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6. “보수”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) 집합투자업자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</p>

	<p>터 지급 받는 금전</p> <p>2) 판매회사보수 :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</p> <p>3)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</p> <p>4)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</p> <p>5) 성과보수 :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</p> <p>6)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</p> <p>7)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일회적으로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</p> <p>8)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.</p>
<p>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<생략></p>	<p>제4조 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<이하동일></p>

<p>③ ~ ⑦<추가></p>	<p>③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유사전략, 동일구조의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,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</p> <p>특히,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수준은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에게,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성과보수는 법 제86조(성과보수의 제한), 법시행령 제88조(성과보수의 제한)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(성과보수의 제한)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 2.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는 법 제76조 제5항의 한도를 적용한다. 3.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투자자가 부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	<p>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.</p> <p>⑦ 동일한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복수의 자집합투자기구 등 실질이 동일한 집합투자구간에는 수수료·보수 수준이 동일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소규모 투자신탁 해소를 위한 모집합투자기구 이전, 전환 등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</p>
<p>제5조 (<추가>수수료의 체계) ①~③<생략></p>	<p>제5조 (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의 체계) ①~③ <이하동일></p>
<p>제6조 (<추가>기본수수료의 계산) ①~②<생략></p>	<p>제6조 (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의 계산) ①~②<이하동일></p>
<p>제7조 (<추가>성과수수료의 계산) ①~④<생략></p>	<p>제7조 (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의 계산) ①~④<이하동일></p>
<p>제8조 (계약자산의 평가)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법 제238조 집합투자자산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8조 (계약자산의 평가)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자문계약,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의 평가는 법 제238조 집합투자자산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
<p>제9조 (수수료 인상) <신설></p>	<p>제9조 (수수료 인상)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,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를 거쳐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.</p>
<p>제12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 회사가 투자자에</p>	<p>제12조 (수수료의 부과절차) 회사가 투자자에</p>

<p>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.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추가> 기본수수료: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(이하 “선취” 라 한다)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(이하 “후취” 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선취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2. <추가> 성과수수료: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, 고객은 [별지 제2호]에 따른 성과수수료 계산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3. <생략> 4.~ 6.<추가> 	<p>게 부과하는 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다음과 같다. 다만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 부과절차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: 회사는 수수료를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징수하는 방법(이하 “선취” 라 한다)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시점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(이하 “후취” 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선취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2.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: 회사는 계약만료일 또는 해지일에 운용성과가 투자자와 계약상의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성과수수료를 부과하며, 고객은 [별지 제2호]에 따른 성과수수료 계산내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3. <이하동일> 4.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수수료 또는 보수의 비율 또는 금액, 그 부과 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5.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 6.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
--	---

6.3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	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-	---